

함께주택5호 입주자 모집 공고(203호, 원룸)

함께주택협동조합 5호주택 (이하 함께주택5호) 203호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함께주택 5호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 후 사업대상지로 제공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여 민간주택운영사가 건설한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입니다. 함께주택 5호는 토지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건물은 함께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여 운영됩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토지구매대금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건물건축대금은 주택협동조합이 부담합니다. 민과 관이 토지구매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각자의 비용 투입을 절감하면서 공공주택의 공급은 늘릴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 사업입니다.

함께주택5호에 입주하는 시민은 함께주택협동조합의 거주조합원이 됩니다.

거주조합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거주보증금과 주택사용료입니다. 거주보증금은 직간접공사비와 사업비로 구성되고 주택사용료는 토지임대료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입주하는 거주조합원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함께주택 거주조합원은 조합운영에 관한 재정조달, 주택의 품질유지, 각자의 프라이버시와 공동생활의 약속, 장래에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하기 위한 운영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을 연대와 협동으로 함께해나가는 경험은 협동조합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께주택 거주조합원의 역할>

- 1) 함께주택의 거주조합원이 된 사람은 단순히 소비자 또는 세입자가 아니라 주택에서 안정된 삶을 영유하고 함께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입주 후 거주조합원은 거주자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월 1회 거주자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합니다.
- 2) 거주자 자치회의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고 다른 거주조합원의 사생활 등 권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 3) 함께주택의 거주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분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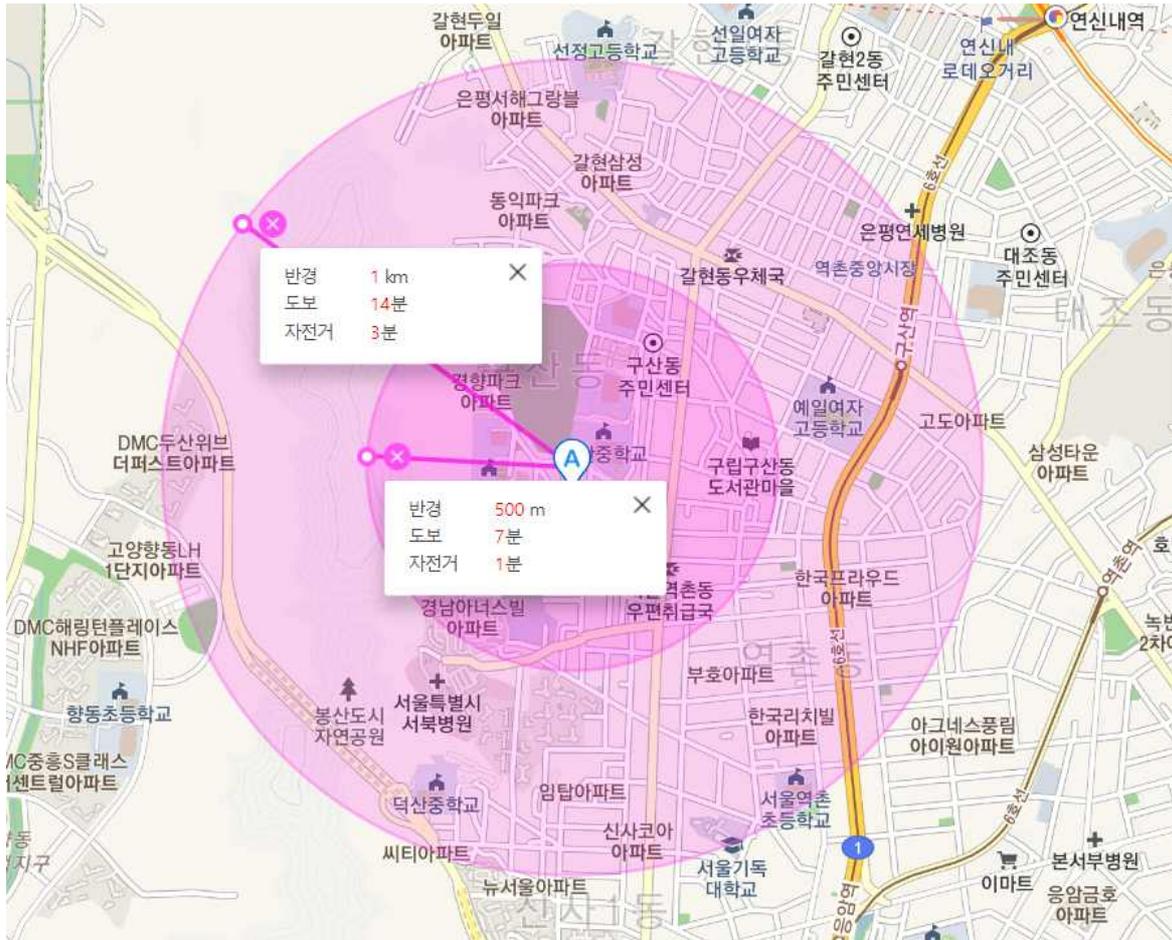
(함께주택 역할분담 표준안 화일 첨부)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처럼 여기는 풍토와 세입자의 위치에 놓여 맘껏 생활을 즐길 수 없는 현실을 바꿔가는 의미 있는 과정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위치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78-7



2) 건축물 개요(2021년 12월 준공)

명칭	함께주택5호	위치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78-7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수	지상5층(주차4대)
대지면적	187.5㎡(56.7평)	주용도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면적	112.32㎡(33.9평)	건폐율	59.9%
연면적	374.95㎡(113.4평)	용적률	199.97%
세대수	주택 9세대, 근린생활시설 1호, 커뮤니티공간 1호		

2

함께주택 입주자 역할

- 1) 함께주택의 입주자는 단순히 소비자 또는 세입자가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입주 후 거주조합원은 거주자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월 1회 거주자회의에 참석합니다.
- 2) 함께주택의 입주자는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무국과 역할을 분담합니다.

<함께주택 역할분담 표준안>

업무구분		입주자	공동업무	사무국
주택 건설	건축부지 마련			○
	자금조달계획 초안 마련(주택기금융자 등)			○
	자금조달계획 결정		○	
	주택기금융자 신청 등 자금조달 실무			○
	시공사 선정			○
	건축설계			○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구조·외장공사			○
	가구배치 등 내장(인테리어)공사		○	
	사업비용 집행·정산			○
주택 관리	주택운영관리기구 최초 구성		○	
	주택관리규칙 마련		○	
	공용부분(계단, 복도, 커뮤니티 공간 등) 청소	○		
	공용공과금(전기, 수도) 수납 및 납부	○		
	경미한 수선, 소모품 교체	○		
	주택관리 운영예산 확보		○	
	중요한 하자, 보수		○	
	건축비 용자금 상환		○	
	재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 납부		○	
	토지임대료 납부		○	
회계·경리		○		
빈 방 관리 및 신규 입주자 모집	주택입주 준비		○	
	빈 방 관리	○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	
	소득수준 등 입주자격 검증(객관지표)			○
	필요시, 신규 입주자 면접 및 선정(주관지표)	○		
	신규 입주자 오리엔테이션	○		
생활수칙 등 공동체 규범 마련	○			

3

입주자 워크숍 안내

일정	내용	역할
입주 확정	함께주택 안내 및 함께주택 조합원 교육	예비입주자
입주	입주 시 시설확인 및 관리 안내	
입주 후	거주자자치위원회 소개 및 매월 1회 참석	자치위 운영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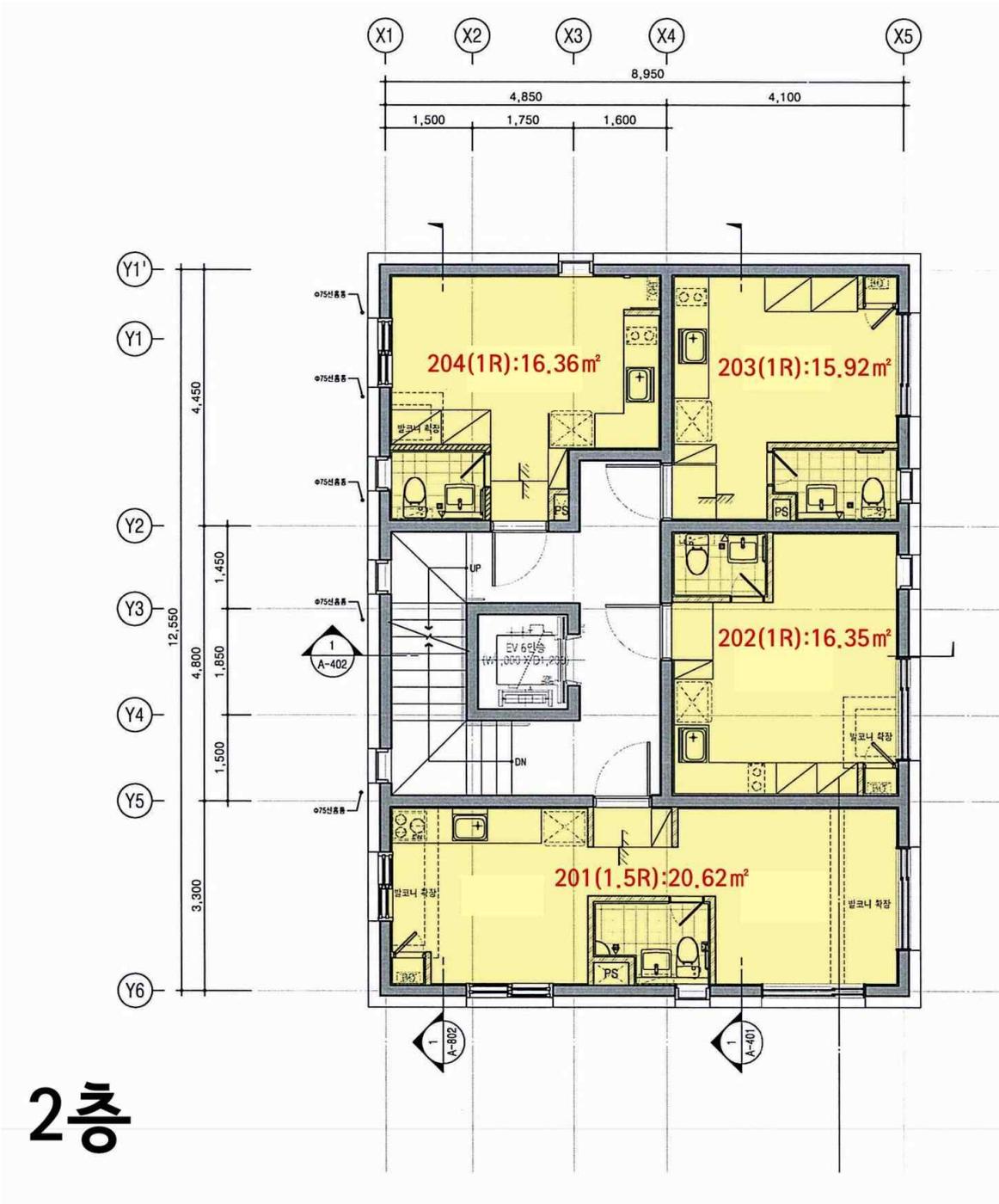
함께주택5호 203호 입주자 모집 개요

1) 함께주택5호 203호 면적, 주거비용 (보증금, 월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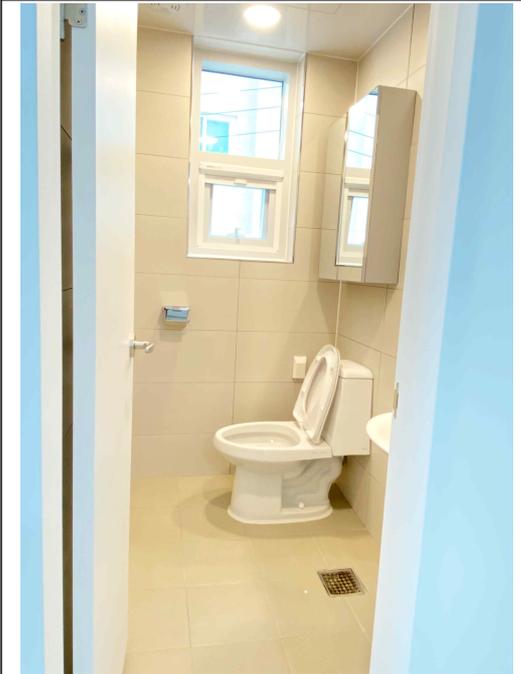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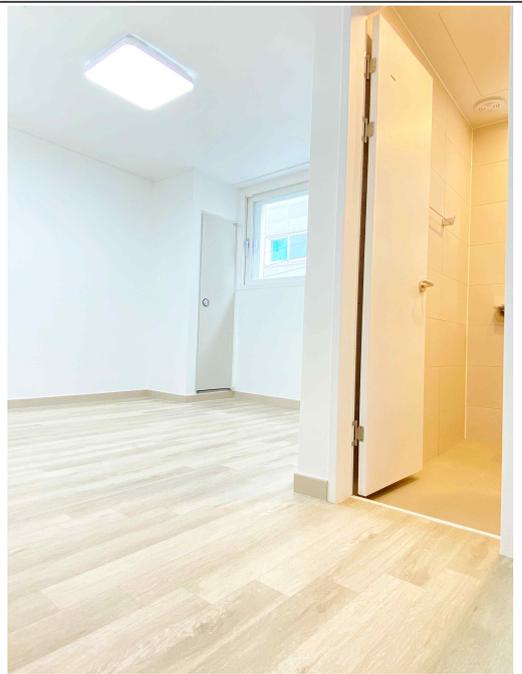
유형	호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보증금 (원)	월사용료 (원)	특징	상태
		m ²	평	m ²	평				
8 평형 (1룸)	203	15.75	5	27.14	8	35,000,000	269,000	원룸	모집중 (1세대)
커뮤니티	101	25.73	7	27.13	8	-	-	입주자 전용 시설	

- ※ 보증금과 월세 비율 조정이 불가합니다.
- ※ 제시된 보증금과 월사용료는 서울시 전세 시세 80% 이하 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 비율 70% 이하, 월세 전환율 4.2%를 적용한 가격입니다.
- ※ 엘리베이터 유, 개별 세대 세탁기, 에어컨 설치됨. 냉장고 미설치.
- ※ 인터넷 및 TV 회선 제공(별도 비용 부담)
- ※ 1층 커뮤니티 공간 사용

2) 함께주택5호 203호 도면 및 전용공간 소개



2층



3) 거주조건

거주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 시 2년 계약 합니다. - 계속 거주 희망 시 4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10년). - 보증금과 월사용료는 물가변동과 시설보수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전세시세대비 80%이하를 기준으로 보증금 비율 60%이하 적용 - 보증금과 월사용료 비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거주자 자치회의 구성원이 되어 월1회 자치회의 참석을 의무로 합니다.

4) 보증금 대출 안내

- 보증금 대출을 희망하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신용과 자산규모에 따라 대출금액이 다르므로 입주자 선정 이후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가 확정된 분께 사회주택 보증금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5

입주 절차

단계		일정	내용
1	입주자 모집 공고	2025년 10월 28일	전화문의: 010-4234-7600 서류접수 및 문의 : thecommon@daum.net
2	소득기준 심사 결과 안내	서류제출 후 10일 이내	개별연락
3	집 보기 및 입주자 결정	모집완료시까지	2. 거주자역할(4p) 안내 4-(3) 거주조건(8p) 안내 입주자결정: 서류 접수 순서대로 거주자역할 및 조합원역할 동의 확인, 집보기, 입주 의향 확인하여 입주자 결정
4	입주계약서 작성 및 조합 가입	입주확정 후 1주 이내	계약시 입주보증금의 10% 입금 입주시 입주보증금의 90% 입금 : 신한 134-003-808041 (예금주: 함께주택협동조합) ※ 조합 가입 별도 안내
5	입주 시작	2025년 11월부터 가능 (협의 후 최종 결정)	

6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2025년 10월 28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소득기준

○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구분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4,317천원 이하	6,572천원 이하	9,152천원 이하

② 자산기준

구분	총자산가액 기준	비고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 순자산 평균값 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	3억 3,700만원 이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③ 자동차가액 기준

입주자 자동차가액 기준	비고
3,803만원 이하	공공임대주택 자동차가액 산정기준 준용

<참고사항>

-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으로 근로소득(상시·일용·차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합니다.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며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세전소득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세대 당 가구원 산정 시 임신부의 태아도 구성원에 속합니다)
- ※ 무주택 여부, 소득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부에게 적용됩니다.
- ※ 신혼부부의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로부터(재혼 포함) 7년 이내임
- ※ 예비신혼부부의 기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주자. 입주일까지 혼인사실관계증명서 제출 가능해야 합니다.
- ※ 1인 가구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 ※ **입주 모집 공고일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부모, 형제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입**

주를 희망하는 예비 1~2인 가구는 서울소재 직장, 학교 입증 서류를 제출하고 입주 완료 후 2주 이내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필하여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확정

별도 서류 평가나 심사과정 없이 **◆ 6. 신청자격(9~10p)을 만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동의한 후 입주 의사를 표하면 입주자로 확정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동의하고 입주 의사를 표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거주자로서 역할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사항>

◆2. 함께주택 거주자 역할(4p), ◆4-3)과 거주조건 (8p)

1) 신청기간 : 입주 확정시 까지

2) 서류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thecommon@daum.net

※ 각 서류를 각각의 파일로 보내지 마시고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pdf 또는 jpg 파일로 보내 주세요.

3)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① 입주신청서 (별지1호)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2호)
- ③ 입주자 자격입증 제출서류(아래 표 서류를 모두 제출)

※입주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의 자격입증 서류 동일하게 제출

※입주신청자가 청년(만19~39세)인 경우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요건 충족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기본 자격 확인 (본인)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주민등록등본은 모집공고일 이전 전입		
자산 자료 (본인)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단위) 1부 -과세연도: 2023년도 -세목: 전체세목, 세부내역 포함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구청, 시청, 주민센터 정부24, 위택스(인터넷)	전국단위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발급처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음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1부 -과세연도: 2023년도 -세목: 전체세목, 세부내역 포함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발급				
해당시	5.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연식+차종)	자동차365			
	6. 보험개발원 검증금액(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			
소득 자료 (본인)	7.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주민센터, 국민건강보 험공단(인터넷)	현재까지 모든내 역 발급		
	8. 소 득 자	무소득자	8-1.소득없음 사실증명서 ¹⁾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전년도 1월~현 재
		근로자	8-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전년도 1월~현 재
			8-3.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센터, 국민건강보 험공단(인터넷)	전년도 1월~현 재
근로자외 (사업자 등)	8-4.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7월까지: 전전 년도 7월이후: 전년도		

※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필수 공통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실입주 이전까지 제출
- (예비)신혼부부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대표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각각 제출
- 신혼부부 추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합니다. 맞벌이 일 경우 부부 모두 소득심사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2. 3>

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3.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문의>

메일 : thecommon@daum.net

전화 : 070-8260-7112 / 010-4234-7600

홈페이지 <https://hamkkecoop.modoo.at/>

다음카페 <https://cafe.daum.net/housingco-op/UVlg>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ithcommon/>

1) 입주신청자가 청년(만19~39세)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의 소득자료 제출

[별지 1호]

접수번호	
------	--

함께주택협동조합 5호 주택 203호 입주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폰번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집전화		이메일 주소	
		자택 주소			
무주택 여부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자임을 확인함				
가구유형 및 월평균 소득	<input type="checkbox"/> 1인가구 4,317천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input type="checkbox"/> 2인가구 6,572천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input type="checkbox"/> 3인가구 9,152천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총 자산	<input type="checkbox"/>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input type="checkbox"/> 소유 자동차 없음 <input type="checkbox"/> 3,803만원 이하(공공임대주택 자동차가액 산정기준 준용)				
<p>위와 같이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는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소득 기준 등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 : (인장 또는 서명)</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처리사무 : **함께주택5호**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조회·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 순위 결정
 -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 소득 항목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자산 항목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 자활근로내역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 순위 결정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및 입주예정자 선정 결과
 -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 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4.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위 2~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 명)

20 . . .

함께주택협동조합 귀하

[붙임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주택 공급 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신청가능함.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붙임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1.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2.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3.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임업 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 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 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 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